



국가배상신청 안내문

지방재정공제회 보험처리 안내

-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하여 영조물하자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본 배상신청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 보험처리를 문의**하시기 바라고 보험처리가 안 될 경우 본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 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국가배상심의제도는 당사자가 제출하는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외부위원(판사, 변호사, 의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회에서 국가배상책임 유무를 심의하여 **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입니다.
- 국가배상심의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손해를 야기한 행정기관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배상여부만을 판단하는 심의기관입니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사결과가 저희 심의회에 도달해야 심의할 수 있어 일정 기간(**현재 전년 대비 접수 건수가 평년의 2배인 관계로 1년 이상 소요가 예상됨**)이 소요되며, 배상 역시 해당 행정기관에서 하게 됩니다.
- 신청서는 신청인의 주소지·소재지 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리한 배상결정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청서에 본인이 겪은 사고에 대하여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많이 제출**하여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배상심의와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은 절차 진행상 서로 방해 되지 않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배상심의회에서는 비용이 들어가는 감정이나 검증을 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입증이 불확실하면 기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 아래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빠짐없이 충실하게 제출하시고 향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 국가배상 신청대상

-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하천 등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어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공공기관인 OO공단, OO공사 등은 법인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 상 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OO공단, OO공사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일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효과적임(예를 들면, 앞서 가던 자동차가 떨어뜨린 낙하물 등으로 인한 손해는 공무원의 과실로 보기 어려움)

국가배상신청서 작성요령

◎ 신청서 작성

- 신청서의 각 빈 칸을 **빠짐없이 기재**해 주시고, 다음의 유의사항을 지켜주시면 신속하고 유리한 배상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신청인**” 내지 “**피해자**”란에 대하여
 - 통상 사고(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신청인
 - 타인 명의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에 대한 재산상 피해자는 운전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이므로 피해자란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 ※ 운전자가 위임받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인(자동차명의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위임인란에 인감도장 날인)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의 위임인에 자동차등록증상 명의인을 기재
 - 그 밖에 사고를 입은 당사자(피해자)가 아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의 위임인에 피해자를 기재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법원의 법정대리인 결정문 또는 후견인 결정문) 제출
 - 신청인 및 피해자가 법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는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명칭을 기재하여야 함
 - 신청인 및 피해자가 수인인 경우, 신청인란 및 피해자란에 “OOO 외 O명”으로 기재 후,

첨부된 별지("신청인 표시표")에 신청인 및 피해자 전원의 인적사항 기재 요망

- 자동차 명의인이 공동명의인 경우 피해자는 공동명의인 모두이므로, 공동명의인들이 공동으로 신청을 하여야 하며, 공동명의인 중 1인이 나머지 명의인을 대리하여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를 첨부하고 피해자란과 신청인란에 공동명의인 모두를 위의 수인인 경우와 같이 기재
- 신청인의 주소지는 반드시 등기우편 송달이 가능한 주소의 도로명 주소를 기재.
- 신청인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사고개요"란에 대하여

- 신청서에는 대략적인 사고내용을 적으신 후, 상세한 것은 별지 등을 이용해 사고개요서에 자세히 기재하시는 것이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사고 장소의 정확한 행정구역 명을 인터넷 및 행정청에 확인하고 기재 요망
- 가해자 소속 란에는 사고지점에 대한 유지·관리의 책임이 있는 관청 명을 기재(예:○○시청 ○○과, ○○구청 ○○과, ○○국토관리사무소 ○○과 등)
 - 가해자 소속은 사고지점 행정구역의 관공서(예: ○○구청 민원실 등)에 문의
 - 도로나 인도의 하자로 인한 사고의 경우, 해당 도로명을 알아두셨다가 문의하시면 됩니다.
 - 민간 업체나 기업이 사고 지점을 관리하는 경우 국가배상 신청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사고 일시 및 시각(예: 오전 06:00경, 저녁 18:00경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당일의 기상(예: 일몰 후, 비가 옴, 눈 내림 등)을 기재 요망
- 사고 내용은 최대한 상세하게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기재 하되, 최소 10줄 이상이 되도록 자세히 작성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
-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번호 및 차종 기재 요망
- 사고 자동차의 진행방향,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경위 기재 요망
- 도로파손으로 인한 사고시 포트홀(구덩이)의 깊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
- 기타 낙하물로 인한 사고시 낙하물의 길이와 크기를 cm단위로 기재 요망
- 사고로 인한 피해 또는 파손 부위(예 : 자동차 운전석 앞 타이어 및 휠, 자동차 조수석 뒤 타이어)를 명확히 기재 요망
- 사건당일(야간 사고 발생시 그 다음 날) 민원을 제기하였는지 여부, 파손 후 바로 정차하였는지, 보험회사를 부르지 않았다면 왜 부르지 않았는지를 구체적으로 사고개요서에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영조물관리기관에 신고한 일시, 신고 받은 공무원의 부서·직급·성명 기재 요망
- 만일 사고 목격자가 있다면 동인의 이름과 연락처 및 목격 경위 기재 요망

○ "신청액"란에 대하여

- 각 해당란에 본인이 청구하고자 하는 금액을 정확히 기재한 뒤, 합계란에 총액을 기재
- 신청액을 해당란에 정확히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심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각 결정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치료비·약제비 등은 요양비, 물적 손해는 재산손해, 정신적 손해는 위자료 등으로 각 항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
- 모든 금액은 객관적 증빙자료에 기초한 금액이어야 하므로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증거로 인정
※수기식영수증, 간이영수증, 단순 견적서·명세서 등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 결정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자료는 치료일수(통원치료 포함) × 최대 2만원 (단, 사망 또는 장애발생의 경우 별도의 기준에 따름)
- 휴업배상 또는 위자료 인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액란에 기재

○ "위 사고와 관련하여 이미 지급받은 금액"란에 대하여

- 보험회사, 가해자, 타인으로부터 사고와 관련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기재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차보험 처리를 한 상태라면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 허위 기재 시 형사상 사기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음

◎ 구비서류 제출

- 아래와 같은 구비서류가 제출되지 않으면 심사 기간이 장기화 되는 동시에 심의회에서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확보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구비서류>

- 국가배상신청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신분증 앞뒷면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의 여권 등)을 첨부
 - 대리인이 신청 시 신청서에 위임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위임장 및 위임인과 대리인 모두의 주민등록등본
 - 위임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각각 첨부
- 사고 장소의 사진(현장사진 및 현장약도-인터넷지도 활용) 및 사고 후 사진(자동차의 경우

파손부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게 자동차 전체사진 포함)을 컬러로 A4용지에 붙여서 제출하면 국가배상심의에서 신청인에게 아주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사진을 직접 제출함과 동시에 파일을 **CD나 USB에 담아 제출하시면 심의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음)**

<구체적 사안에 따른 추가 구비서류>

☆ 자동차 파손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험회사 긴급출동확인서 또는 렉카차 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 블랙박스 영상(있는 경우 CD 혹은 USB로 제출)
- 민원처리대장 및 출장복명서 또는 사고사실확인원 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사고 후 관리청에 민원을 제기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관리청 홈페이지에 민원 글 올리신 것을 캡처하여 출력해주셔도 되고, 담당자와 통화나 문자한 내역 등을 보내주셔도 됩니다.)
- 자동차 점검·정비 명세서(또는 견적서): 구체적인 수리 내역 포함되어야 함
- 자동차 수리비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국세청 소득공제용 현금 영수증 등이 가능. **수기식 영수증, 간이영수증은 정당한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될 가능성이 높음**)
- 수리 전·후 사진(파손되었던 부분 사진, 자동차번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 사진을 포함하여 사진을 A4용지에 붙여서 제출)
-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보험증권) 사본
- 자차가입자의 경우 중
 - 자차처리를 한 경우는 보험금지급내역확인서
 - 자차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제목은 할인할증 등급확인서 / 요율 등급확인서/적용율등급확인서/무사고증명서/사고내역서 등 보험사마다 상이(두 서류 중 하나를 반드시 제출하되 사고유무 및 자차처리 여부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신체 상해시

- 진단서·소견서 및 진료차트(상해일자 및 진단일자 기재되어 있을 것)
- 치료비 명세서(통원일자 확인용)
- 치료비 영수증(병원비, 약제비 등)
- 입·퇴원 확인서(입원한 경우 제출)
- 구급차출동확인서(출동한 경우 제출)
- 골절 사고시 X-레이 사진 등

※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 신체장애의 종류를 기입한 의사의 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 근무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장례비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가배상은 과다·허위청구 등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용지출 후의 사후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수리를 마친 후 그 영수증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
- 위의 서류 외에 사고의 내용 및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CCTV영상, 목격자 진술서, 112 출동확인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자료제출에 제한 없음)
- **사진 및 영수증** 등은 신청서 접수과정에서 분실되거나 신청서에서 분리되지 않도록 **원본(컬러)을 A4용지에 부착하여 해당 자료에 대한 설명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목격자가 있는 경우 **목격자가 직접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에 목격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목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감을 날인** 받아 목격자의 **인감 증명서**(또는 신분증 앞뒷면 사본)와 함께 제출하십시오.
- **일일 실제수입(휴업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직업 및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재직증명서**(근무기간 기재되어 있을 것), **월 수입액을 증명하는 관계 증명서**(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의 소득금액증명서 또는 구청장·시장·군수와 피해자의 근무처의 장의 급여액증명서나 기타 공신력 있는 월수입 증명서, 사고발생 직전 3개월분이 표시되어 있을 것)를 제출하여 소득의 감소 사실을 입증하여야 신청인에게 유리합니다.(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의 배상은 입원이 아닌 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
- **부동산 관련 손해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 편철 방법

- 국가배상신청서를 위로 하여 **공통서류 → 추가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제출

◎ 유의사항

- 국가배상신청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배상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로 인하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에 대한 배상은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사에서 배상을 받고도 이중으로 청구하는 경우, 손해액을 부풀려서 과다청구 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같은 사안으로 이미 재판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경우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며**, 가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손해가 전보된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취하여야 합니다. 손해전보를 받았음에도 국가배상신청을 하거나 취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 국가배상법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보정을 요구 할 수 있고**, 보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법 제13조 제8항에 의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 부득이 본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결정** 되더라도 법무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시 기각되면 일반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가배상 신청 접수 후 현재 기준 1년 정도 지나면 배상여부에 대한 결정 정보 등이 송달됩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순서대로 심의를 하므로 지체될 수 있습니다.
- 심의결과가 나오면 전화 등 **유선상 결과 통보는 이루어지지 않고**, 신청인의 주소지로 결정서가 **등기 송달**됩니다. 따라서 배상신청 후 주소지 또는 연락처 변경된 경우에는 수원고등검찰청으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신청방법: 등기우편접수 또는 방문 접수

- 등기우편 주소: (16512)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91, 수원고등검찰청 사건과 송무팀
 - 전화번호: 031-5182-3370, 3365
-